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 22) 상정
-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 22)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

###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완료 연도를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용자대상자 및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20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하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함.(안 제3

조 및 제4조)

- 기금의 용도는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금,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안 제5조)

- 기금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 및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게 용자하고, 중소기업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6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
- 위원은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소기업 대표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안에 관한 사항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의 교부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8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용자금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의 교부대상, 지원 및 교부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용자금의 용자계획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의 교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미리 시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안 제15조)
- 용자금 등에 대한 신청 및 평가·선정, 보조금의 결정·교부,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용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 지원 대상은?</li> <li>○ 보조금의 반환 조건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제조업자 및 서비스 업자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한지 2년 이내인 자임.</li> <li>○ 해당 사업의 결정취소 및 사업의 중지시에 반환이 됨.</li> </ul>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수정의결 사유)

- 본 육성기금 목표액 확보를 위한 기간을 당초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 동의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207호
의결 년월일	2008. 1. 23 (제141회)

제안년월일 : 2008. 1. 2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1. 수정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완료 연도를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20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금 조성 완료 연도를 5년간 앞 당겨 2015년으로 수정함.

## 2.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완료 연도를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수정함.  
(안 제3조제3항)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중 “2020년 까지”를 “2015년 까지”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 함.



[수정안 포함]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중에서 호텔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체·학교·관공서와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말한다.
6. “기술개발”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연구기관”이란 시장과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2015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용자금”이라 한다)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2. 시금고는 시장의 용자대상 업체 결정 통보에 따라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게 기금을 용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용자할 수 있다.
3.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4.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은 시장과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르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용자조건 및 용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시금고 이외 금융기관의 자체자금 용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용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협조 용자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된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담당이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안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의 교부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안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업자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 중에서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 이내(법인인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인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4.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았거나 입주한 업체 대표자. 다만,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에 따른 융자신청자는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자에 한한다.
5.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 대한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

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사업
2.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 개발사업
3.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교부대상 업체에 대한 세부교부기준, 우선교부대상, 교부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융자금의 지원조건) ①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입지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대출금리는 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게 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융자기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의 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장과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2. 사업이 예정기일 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용자총액, 용자한도액, 용자대상, 용자조건 및 용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자금의 총액, 과제당 연구개발비, 교부대상·조건 및 신청절차 등 교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용자금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받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입증자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약서
3. 그 밖의 제출서류

제17조(평가 및 선정)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순위 및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자대상자 지원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한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제18조(보조금의 결정 및 교부) ①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교부 적격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교부를 결정하여 신청자 및 연구기관에 그 결정 내용과 교부조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원하며, 시장과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③ 연구기관은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19조(추가용자) 시장은 연도 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시금고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한 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차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14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결정취소 또는 사업이 중지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중에서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변경사항의 통보) ① 용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용자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하였을 때
2.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3. 사업자가 파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사후관리) 시장, 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① 시금고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협약금융기관은 융자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금고 및 협약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하는 때와 제21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운영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금) 지원신청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 1. 대출신청 개요

신청일자		접수번호	
신청금액		대출희망은행	
채권보전방법	신용,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기타( )		
이미 지원된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및 부천시중소기업자금의 지원액 잔액	백만원		

### 2. 기업체 개요

업체명		성명	(실질경영주: , 관계: )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FAX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종업원수	상시:	임시:
기업형태	법인, 개인, 기타	기업공개	상장, 등록, 기타	
표준산업분류번호		주거래은행		
공장등록여부	공장등록, 공장용도사용확인기업, 건축물용도가 제조업종인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 임차내용				

### 3. 주요경영사항

--

※ 최근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개발, 자금사정,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및 대책 등 기재

#### 4.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품 명(사업명)	당 기	
		금 액	구 성 비
계			
국내판매			
수 출			

#### 5. 업종현황 및 시장여건

제품수명주기	<input type="checkbox"/> 도입기	<input type="checkbox"/> 성장기	<input type="checkbox"/> 성숙기	<input type="checkbox"/> 쇠퇴기	
향 후 전 망	<input type="checkbox"/> 매우양호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현상유지	<input type="checkbox"/> 사양확실	
주요경쟁업체	<input type="checkbox"/> 매우높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매우낮음
시장진입장벽	<input type="checkbox"/> 매우높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매우낮음

#### 6. 기술력

##### 가.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	고안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비 고

※ 종류란에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구분 기재하고, 출원 중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

##### 나. 규격표시 획득현황

종 류	승인품목	승인번호	승인기관	승인일자	비 고

※ 종류란에는 ISO, KT, NT, EM, 100PPM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현행 조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1998. 05. 25 전문개정 조례 제1577호

개정 2000. 05. 24 조례 제1748호

개정 2003. 09. 23 조례 제1982호

개정 2005. 11. 11 조례 제21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를 말한다.
5.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체·학교·관공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기술개발"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구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기금은 2010년까지 총300억원을 조성한다.

제4조(기금조성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금고 및 기타금융기관의 용자(이하 "중소기업운전자금, 입지자금"이라 함)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2.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
3. 중소기업체에 대한 용자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계 위탁 <개정 2005.11.11>

2.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용자대상업체 결정 통보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기금을 용자하여야 한다.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중소기업에 용자 할 수 있다.

3.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중소기업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4.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은 시장과 시금고와의 협약에 의하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용자조건 및 용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

6. 기금관리 시금고이외의 금융기관 자체자금 용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협조용자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된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소기업대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중소기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 신설 2003.09.23>

제6조의3(위원회 개최)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안 등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3.09.23>

제6조의4(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용자대상자 및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09.23>

제6조의5(일비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09.23>

제7조(용자대상) ①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부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창업한자중 기업설립일로부터 2년이내(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인자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중 호텔업자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5.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입주 한 업체 다만,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분양에 따른 자금 신청자는 부천시에서 공장을 가 동하는 자에 한함
6.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제1항 용자대상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기술개발보조금교부대상) ①시장은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1.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2.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3.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보조금교부대상업체에 대한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등은 시장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입지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대출금리는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9. 23>

3. 용자기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 여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③용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장과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3.09.23>

제8조의2(기술개발보조금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2. 사업이 예정기일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 게 신고할 것

3. 기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고) ①시장은 매년 기금의 용자실시 이전에 용자총액, 용자한도액, 용자대상, 용자조건 및 용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기술개발보조금 교부이전에 연구개발총액, 과제당연구개발비, 대상, 조건 및 신청절차등에 관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①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고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용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 입증자료
3. 기타 제출서류

②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개발자금을 받고자할 경우 대학, 국책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함)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협약서
4. 기타제출서류

제11조(평가 및 선정) ①시장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등을 검토, 평가하여 업체별 지원순위를 정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시금고, 협약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②용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한다.

제11조의2(보조금결정 및 교부) ①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교부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후 교부결정하며, 교부결정을 한때에는 신청자 및 연구기관에 그 결정 내용과 교부조건을 통지한다.<개정 2003. 9. 23>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 교부하며, 보조금의 교부는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③연구기관은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2조(추가용자) 시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시금고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용자금의 상환) ①용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정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3. 9.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한 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등에 의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의2(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의2 및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결정취소 또는 사업이 중지된 경우 그 취소된 사업부분에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중 이미 수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3장 보칙

제14조(변경사항 통보) ①용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용자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②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하였을 때
2.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3. 사업자가 파산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시금고가 필요한 때에는 용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용자금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시금고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협약 금융기관은 용자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에 기금용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③연구기관은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할 때와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1998. 5. 25 조례 제15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협약·용자승인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 부칙(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0. 5. 24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3. 9. 23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생략

②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계 예탁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역균형개발및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3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며, 제6조의2제4항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고, 제6조의5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7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